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60
----------	-------

발의연월일 : 2025. 7. 9.

발 의 자 : 박용갑 · 이병진 · 조인철
소병훈 · 이해식 · 박희승
서삼석 · 박수현 · 문진석
정준호 · 염태영 · 황정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45만 원에 불과하여 생활이 열악한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액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지급액에 대해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외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명예수당 지급액은 제9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⑨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8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of 명예수당 가이드라인 이행실적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의 특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이 법 시행 후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생략)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u>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지급액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 수당 외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 할 수 있으며, 명예수당 지급액 은 제9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경 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⑨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 자의 생활안정과 다른 지역과 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 하여 제8항에 따른 지방자치단
<신설>	
<신설>	

<u><신 설></u>	<u>체의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명예수당 가이드라인 이행실적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⑩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